

대구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3236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32361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1가단43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정대규

변론 종결2024. 5. 1.

판결 선고2024. 7. 24.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1가단43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7,212,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4.부터 2024.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39,728,612원, 피고 C은 19,212,9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작성일인 2017. 12. 6.까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토지 공동투자와 관련한 기존 채권, 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중국적으로 4,2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되어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의 채무액이 4,25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3) 위 4,250만 원은 그간 토지 공동투자 중 H 토지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이 1,000만 원임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채무액 1,000만 원은 원고가 이미 피고 B에게 4,4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 채무가 존재한다고 착오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을 취소하였다.

4) 원고의 취소로 이 사건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정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액과 변제액을 다시 정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39,728,612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피고 B은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39,728,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변론종결 후 후소에서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참조).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고서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참조).

2)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20,186,62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차용증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오에 기초한 취소권의 발생은 전소인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론종결 전에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J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하는데, 피고 C이 가장채권자로서 19,212,974원을 배당받아갔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 1)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피고 C 명의로 이 법원 2017차156호로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지급명령은 2017. 2. 15.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피고 C 명의로 경매신청비용 2,0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원고 소유인 J리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4.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R,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2. 11. 신청채권자인 피고 C에게 15,019,223원이 배당되고 집행비용 4,193,751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 및 집행비용 중 17,212,974원[19,212,974원(배당금 15,019,223원+집행비용 4,193,751원)-경매신청비용 2,000,000원]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212,9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 원고와 피고 B은 2013년부터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여 왔는데,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작성 당시까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 2)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J리 토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비롯하여 그 무렵까지의 투자금, 이익과 손실, 분배금을 모두 정산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는데, 피고 B이 회수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변제액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금액을 42,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피고들은 위 배당금과 경매비용을 피고 C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은 2017. 12. 6. 작성되었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7. 12.

11.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배당받을 금액과 집행비용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그 금액 전체가 피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만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과 집행비용을 피고 B의 몫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금액이 원고의 변제액으로 계산되어 원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에서 주장한 정산 내역에도 경매신청비용 200만 원 외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위 배당금과 집행비용을 피고 측의 몫으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계산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5)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 주장보다는 '피고 B이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고, 배당금을 받아서 돌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정산 및 차용증을 요구하여 배당금을 제외하고 정산한 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은 피고 C이 받을 배당금과 집행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금액 전부를 정산하여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관련 민사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이 반영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위 배당금을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변제 합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위 배당금과 집행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

7) 이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 전부에서 위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공제하지 않고 2019. 1. 21. 이후 변제충당 된 2,84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는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배당금 및 집행비용(뒤에서 보는 경매신청비용 200만원 제외)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

8)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및 집행비용을 수령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및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은 이를 통해 J리 토지를 처분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 C(또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실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9) 다만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한 경매신청비용 2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변제금액으로 반영되었고, 달리 피고 C이 그 금액 부분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 C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상계 주장이 아니라 변제 총당 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위 배당금을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에 총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대방도 피고 C이 아닌 피고 B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212,9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

별지